

원고 제출 및 작성 안내

I. 원고 제출 및 게재

1. 사회과학연구에 발표하는 논문은 학술논문의 기본적인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서 미발표된 것이어야 한다.
2. 사회과학연구에 게재를 원하는 논문은 다음의 과정을 통해 온라인으로 투고되어야 한다.
 - 사회과학연구원 홈페이지 (<http://iss.kangwon.ac.kr>) 접속 → 학술지 「사회과학연구」 → 논문투고신청 → 논문투고하기
3. 제출원고는 국문이나 영문으로 쓰여야 하며 아래의 원고 작성지침을 따라야 한다.

II. 원고 작성의 일반적 지침

1. 제출논문은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문서작성 프로그램으로 작성한다. 글자 크기는 10으로 하며, 여백은 위: 15, 아래: 10, 왼쪽: 25, 오른쪽: 25, 머리말: 15, 꼬리말: 10, 제본: 2로 한다(단위: mm).
2. 원고의 분량은 본문, 각주, 참고문헌, 도표 등을 포함하여 200자 원고지 200매 이내이다.
3. 원고는 표지, 초록, 본문 및 각주, 참고문헌의 순서로 나누어 작성한다.
4. 세부적인 원고 서술 요령은 다음과 같다.
 - 1) 원고의 <표지>에는 논문의 제목, 기고자의 이름, 소속, 주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이메일 주소, 그리고 필요한 경우 감사의 말을 포함한다.
 - 2) <본문>은 새로운 면에서 제목을 쓴 후 시작한다. 본문의 장, 절, 항의 번호는 I., 1., 1), (1)의 형식에 따라 단계적으로 구성한다.

- 3) 〈각주〉는 본문에 대한 추가적인 설명이나 관련된 논의의 소개에 꼭 필요한 경우에 한하며 가능한 짧게 한다. 각주는 논문단위로 아라비아 숫자를 사용하여 작성한다.
- 4) 〈참고문헌〉은 본문이 끝난 후 계속해서 “참고문헌”이란 제목을 단 후 시작한다. 참고문헌 작성은 아래의 참고문헌 작성요령을 참조한다.
- 5) 〈표와 그림〉은 본문 내 적당한 위치에 〈표 1〉 또는 〈그림 1〉과 같은 형식으로 순서를 매겨 삽입한다. 표나 그림의 출처는 표나 그림의 바로 아래에 “출처: …”의 형식으로 제시한다.
- 6) 〈영문초록〉은 제목과 필자명을 포함하며, 요약문은 700단어 이내로 작성하고 〈국문초록〉은 200자 원고지 5매 이내로 작성한다.
5. 〈필자의 익명성〉: 심사시 필자의 익명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자의 이름을 별도의 표지에만 적으며, 본문과 각주 어디에도 필자의 신원을 짐작할 수 있는 여하한 언급도 피한다.
6. 〈한글사용〉: 논문은 한글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한자는 혼란의 우려가 있을 경우에 한하여 사용하되, 먼저 한글로 쓰고 괄호 속에 한자(漢字)를 부기하도록 한다.
7. 〈외래용어〉: 통일된 번역어가 존재하지 않는 외래용어의 경우 첫 번에 한하여 한글 번역어를 적고 괄호 안에 외래 용어를 부기한다.
8. 〈외국인명 및 지명〉: 외국인명이나 지명은 국립국어원의 외래어 표기법 기준에 따라 표기한다. 외래어 표기 규정이 없는 경우 현지의 발음대로 표기한다. 혼란의 우려가 있을 경우 첫 번에 한하여 한글 표기에 이어 괄호 속에 원어명을 부기한다.
9. 〈영문 원고에서의 한글의 영문 표기〉: 영문으로 제출되는 원고에서 한글 고유명사나 특수한 개념을 영문으로 표기할 경우 문화관광부 고시 2000년 8호의 새로마자 표기법에 따라야 한다.

III. 출전표시 요령

1. 한글 이름과 영문 이름: 두 사람 이하는 항상 저자명을 모두 표기한다.
 - 1) 김저자(2018)는, Bruce(2018)는,
 - 2) 라고 주장하였다(김저자, 2018).
 - 3) 김저자와 박저자(2002)는,
 - 4) ...라고 주장하였다(김저자, 박저자, 2018). ... 라고 주장하였다 (Bruce & Lee, 2018).
2. 한글 이름과 영문 이름:저자의 수가 세 명에서 다섯 명일 때: 첫 인용에는 모든 저자를 표기한 후, 그 이후부터는 제 1저자명만 표기한 후 등을 붙인다.
 - 1) 김저자, 박저자와 오저자(2000)는 , (그 이후 인용에서는) 김저자 등(2000)은
3. 두 개 이상의 논문을 인용하는 경우: 먼저 한글 논문을 저자이름의 가나다 순으로 인용하며, 이후 외국 저자의 이름을 알파벳 순으로 인용한다. 그리고 논문 사이에는 세미콜론(:)을 삽입한다.
 - 1).... 라고 주장하였다(김저자, 2012; 박저자, 오저자, 1993).

IV. 참고문헌 작성 요령

1. 순서는 국내 문헌, 동양 문헌, 서양 문헌 순으로 배열한다.
2. 한글로 된 저자명은 가나다 순으로, 중국어나 일본어는 한자의 한글씩 표기의 가나다 순으로, 서양 문헌은 알파벳 순으로 나열한다.
3. 국내 문헌의 저자명은 완전한 성명을 표기하고, 동양 문헌은 완전한 성명을 원어 그대로 표기한다. 서양 문헌은 저자의 성(last name)을 적고, 나머지는 첫글자만을 대문자로 표기한 후 생략 표시로 점을 찍는다 (예, William, A. B.). 저자가 여러 명인 경우 쉼표(.)를 이용하여 구분하며, 서양 이름의 경우 맨 마지막 저자 앞에는 &를 사용한다 (예, William, A. B., Bruce, C. D., & Obama, E. F.)
4. 학술 논문 정기간행물 : 연구자명, 출판 연도, 논문 제목, 정기 간행물

명, 권수(volume number), 호수(issue number), 쪽 순으로 표기한다. 한글 학회지 명은 < > 기호 사이에 표기하고, 영문 학회지 명과 권수는 이탤릭체로 표기한다.

- 1) 김저자, 안저자, 이저자, 최저자 (2001). 다수집단과 소수집단의 견해충돌. <한국 제일 학회 논문지>, 11(3), 105-120.
- 2) Hawker, D. J., & Boulton, M. J. (2000). This is the title of my paper. *Journal Name*, 3(2), 110-119.
5. 단행본 : 저자명 (년도) <서명>. 출판도시: 출판사. 영문 서명은 이탤릭으로 표시한다.
 - 1) 김저자, 이저자 (1999). <봄날은 간다>. 춘천: 제일출판사.
 - 2) Persimon, W. (1890). *The History of Psychology*. New York, NY: Henry Holt and Company.
6. 편집서인 경우 : 저자명 뒤에 (편) 혹은 (Eds.)를 추가한다.
 - 1) 김저자, 이저자 (편) (1999). <봄날은 간다>. 춘천: 제일출판사.
 - 2) Persimon, W. & Melony, T. F. (Eds.) (1890). *The History of Psychology*. New York, NY: Henry Holt and Company.
7. 편집서에 포함된 단일 논문 : 해당 논문의 저자를 표기한 후 논문의 제목 후에 편집자를 표기하고 해당 논문의 쪽수를 표시한다.
 - 1) 백저자, 홍저자 (1999). 안개는 피어오른다. 김저자, 이저자 (편), <봄날은 간다> (33-66쪽). 춘천: 제일출판사.
 - 2) Pears, O. T., Melony, T. F. (1890). I am a soicial scientist. In W. Persimon & T. F. Melony (Eds.), *The History of Psychology*(pp. 66-103). New York, NY: Henry Holt and Company.
8. 번역서 : 원저자의 이름과 출간년도를 먼저 작성한 후 책명과 번역자의 이름과 출판사명을 표시한다.
 - 1) Freedman, S. (2001). <심리학의 역사>. 김저자 (역). 서울: 문예출판사.
 - 2) Piaget, J. (1954). *The construction of reality in the*

child. (M. Cook, Trans.). New York, NY: Basic Books.(Original work published 1950)

9. 학술대회 발표논문

- 1) 김저자, 박저자 (2003). 개인의 성격특질과 행복. <제5차 한국특질학회 연차대회 학술논문집>, 333-338.
- 2) Hayes, R. & Murray, I. (2004). *The construction of reality in the child*. Paper presented at the 7th Annual Conference on Developmental Psychology(pp. 7-10). Detroit, MI: Craig.

10. 학위논문

- 1) 박저자 (1994). <사회과학대학의 발전방향>. 한국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2) Considine, M. (1986). *The construction of reality in the child*.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University of Melbourne, Melbourne, Australia.

11. 신문기사 : 저자명과 실린 날짜 제목과 실린 신문 면을 표기, 저자명이 없다면 신문명을 저자 표시 위치에 표시한다.

- 1) 김호자 (2019. 4. 5). 나무를 심을까, 채소를 심을까? <춘천시민일보>, A3면.
- 2) 춘천제일일보 (2019. 3. 3). 고래가 꾸는 꿈. 4면.

12. 온라인 기사

- 1) 김호자 (2019. 4. 5). 나무를 심을까, 채소를 심을까? <춘천시민일보>. <http://shinmun.co.kr/> (검색일 2000. 10. 10).

13. 보도자료

- 1) 여성가족부 권익보호과 (2019, 6, 5). [보도자료] 가정폭력: 성폭력 피해자 상담지원 현장목소리 듣는다.
http://www.mogef.go.kr/nw/rpd/nw_rpd_s001d.do?mid=news405&bbtSn=706389.

V. 제출처 및 문의

1. 주소: 200-701 강원도 춘천시 강원대학길
강원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사회과학대학 2호관 227호)
2. 전화: 033-250-7212(사회과학연구원)
3. E-mail: socialin@kangwon.ac.kr
4. 홈페이지: <http://iss.kangwon.ac.kr>

사회과학연구원 발행 및 편집위원회 운영 규정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강원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 학술지 편집위원회(이하 '편집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그리고 『사회과학연구』 (영문명: Journal of Social Sciences, 이하 '학술지')에 게재할 논문의 심사 및 출판에 관한 제반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학술지 발행)

- ① 강원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은 사회과학의 기초 이론 발전과 사회 문제 해결에 기여하기 위하여 다양한 사회과학분과 및 학제적 연구 성과를 수록한 사회과학분야 종합전문학술지 『사회과학연구』를 발행한다.
- ② 『사회과학연구』의 게재논문은 사회과학 분야로 하되, 정치학, 행정학, 부동산학, 신문방송학, 심리학, 사회학, 문화인류학, 사회복지학, 경제학 이상 9개 분야를 우선으로 한다. 단 한 분야의 논문이 과다하게 투고되는 등의 상황이 발행하면 편집위원장은 재량에 따라 논문을 반려할 수 있다.
- ③ 『사회과학연구』는 연 2회(발행일: 6월 30일, 12월 31일.) 발행한다. 다만 편집위원회의 결정으로 특별호를 발행할 수 있다.

제3조 (편집위원회의 구성과 임기)

- ① 학술지의 발행을 위해 편집위원회를 둔다.
- ② 편집위원회는 편집위원장과 10인 이내의 편집위원회를 구성하며, 편집위원장과 편집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 ③ 편집위원장은 사회과학연구원 운영위원회에서 선임하며, 편집위원

은 강원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의 목적과 활동에 찬동하는 사회과학 연구자를 편집위원장이 위촉한다.

- ④ 편집위원장은 학술지의 간행업무를 주관하며 편집위원회 회의를 주재한다.
- ⑤ 편집위원회 회의는 필요에 따라 수시로 소집한다. 편집위원회는 재적 편집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며, 출석한 편집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4조 (편집위원회의 임무)

- ① 본 학술지의 편집 방향의 결정과 발행 관련 예산의 집행 및 정산.
- ② 논문심사에 관한 세부 사항의 결정 및 심사위원의 선정과 논문 게재에 관한 최종 결정.
- ③ 학술지 발행과 관련된 기타 사항.

제5조 (심사위원)

- ① 편집위원회는 논문 1편당 3인의 심사위원을 선정한다.
- ② 심사위원은 제출된 논문의 연구대상지역과 전공영역을 고려하여 선정하며, 논문 투고자와 동일한 대학이나 기관에 근무하는 자는 최대한 배제한다.
- ③ 심사위원의 자격은 기본적으로 대학의 전임강사 이상, 연구소의 상임연구원 이상으로 하나, 필요에 따라 해당 연구 분야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연구능력이 탁월한 자를 심사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제6조 (편집규정)

- ① 논문 원고는 연중 수시로 접수하며, 발행일 3개월 전 원고모집 공고를 실행한다. 다만, 편집위원회에서 고지한 일정 내에 편집위원회에 접수된 논문에 한한다.
- ② 본 학술지에 게재되는 원고는 이미 출판되지 않은 것이어야 하며, 별도의 '강원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 윤리 규정'을 지켜야 한다.

- ③ 원고 제출 시 필자는 별도의 ‘원고 제출 및 작성 안내’의 규정을 지켜야 한다. 집필 원칙에 따라 작성되지 않은 논문은 편집위원장의 판단에 의해 심사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 ④ 본 학술지에 게재되는 원고는 한국어 또는 영어로 작성되어야 하며, 한국어 논문의 경우에는 영문초록, 영어 논문의 경우에는 한국어 초록을 첨부한다.
- ⑤ 원고의 분량은 원칙적으로 200자 원고지 250매 이내이다. 편집위원회는 규정 분량을 초과한 논문에 대해서 수정을 요구하거나 간행비용의 추가부담을 요구할 수 있다.

제7조 (심사과정)

- ① 편집위원회는 제출된 논문이 학술지 편집규정에 부합하는가를 검토하고, 적합판정을 받은 논문에 한해 3인의 심사위원을 선정하여 심사를 의뢰한다.
- ② 심사위원은 심사 위촉을 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심사평가서를 작성하여 편집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기간 내에 심사평가서가 제출되지 않을 경우, 편집위원장은 1차 독촉하고 그로부터 1주 이내에도 심사평가서가 제출되지 않으면, 편집위원회는 심사위원을 해촉하고 다른 심사위원을 선정할 수 있다.
- ③ 편집위원회는 1차 심사결과를 논문 투고자에게 통보하고, 수정요청을 받은 투고자는 수정 논문을 지정된 기한 내에 수정대조표와 함께 편집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④ 1차 심사와 재심이 완료된 논문에 대해서 편집위원회는 최종적으로 논문 게재 여부를 확정한다. 최종 심사결과를 논문 투고자에게 통보한다.

제8조 (심사결과 판정)

- ① 심사의 세부 내용은 (가) 연구 목적의 적절성과 명료성 (나) 연구 방법의 적절성 (다) 내용 전개의 논리성 (라) 연구 내용의 독창성

(마) 결과의 학문적 기여도와 유용성 (1) 주제어와 참고문헌의 정확성이며, 각 항목을 5등급으로 평가한다.

- ② 심사위원은 심사의 종합 결과를 ‘게재 가(A)’, ‘수정 후 게재(B)’, ‘수정 후 재심(C)’, ‘게재 불가(D)’로 판정한다.
- ③ 일반적인 판정기준은 다음 표와 같다.

심사결과			판 정	심사결과			판정
A	A	A	게재 가	A	C	C	수정 후 재심
A	A	B	게재 가	A	C	D	수정 후 재심
A	A	C	수정 후 게재	B	C	C	수정 후 재심
A	A	D	수정 후 게재	B	C	D	수정 후 재심
A	B	B	수정 후 게재	C	C	C	수정 후 재심
A	B	C	수정 후 게재	C	C	D	수정 후 재심
A	B	D	수정 후 게재	A	D	D	게재 불가
B	B	B	수정 후 게재	B	D	D	게재 불가
B	B	C	수정 후 게재	C	D	D	게재 불가
B	B	D	수정 후 게재	D	D	D	게재 불가

제9조 (심사결과 이익제기)

- ① 심사 결과에 필자가 이의가 있을 경우, 편집 위원회에 이의 사유를 적시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 ② 이의 의견서가 접수되면 편집위원회는 이의 사유의 타당성에 대해 논의한 후, 그 사유가 타당하다고 판단할 때 새로운 심사위원을 위촉하여 논문에 대한 재심사를 진행할 수 있다. 재심사의 절차는 처음 심사와 동일하다.

제10조 (논문 게재료 및 저작권)

- ① 투고 논문에 대하여 게재료와 심사료를 받을 수 있다. 게재료는 200자 원고지 200매를 기준으로 기본요금을 징수하며, 초과분에 대해서는 원고지 매수만큼의 추가요금을 징수한다.
- ② 논문을 투고할 시에는 투고자연구윤리서약서와 저작권활용동의서가 함께 제출되어야 한다. 게재 논문의 저작권은 본 연구원에 귀속

되며, 게재 확정은 본 학술지의 논문 사용 및 공개 방식에 필자가
동의한 것으로 간주된다.

부 칙(2013년 9월 20일)

1. 이 규정은 2013년 9월 20일부터 시행한다.
2. 이 규정은 2017년 1월 25일부터 시행한다.
3. 이 규정은 2019년 6월 5일부터 시행한다.

강원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 연구윤리 규정

제정 2008년 07월 01일

개정 2013년 09월 20일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연구윤리규정은 강원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이하 연구원으로 표기) 소속 연구자가 연구활동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지켜야 할 연구윤리의 원칙과 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대상) 이 규정은 연구원 소속 연구자 이외에 연구원에서 발간하는 학술지에 기고하거나 연구소 주최의 학술대회에서 발표하는 연구자에게도 적용된다.

제2장 연구 관련 윤리규정

제1절 저자가 지켜야 할 윤리규정

제3조 (표절) 저자는 자신이 행하지 않은 연구나 주장의 일부분을 자신의 연구 결과이거나 주장인 것처럼 연구 결과에 제시하지 않는다. 타인의 연구 결과를 명시함과 더불어 참조할 수는 있을지라도 그 일부분을 자신의 연구 결과이거나 주장인 것처럼 제시하는 것은 표절이 된다. 보다 구체적으로 연구 결과가 다음 각 호에 해당될 경우 표절로 간주한다.

- ① 학술지, 단행본, 학회발표논문집, 전자저널 등 학술매체를 통해 기출판된 타인의 저술의 전부 혹은 일부를 무단으로 전재한 경우.
- ② 기 출간된 타인의 저술에 적용된 연구설계, 미공개된 타인의 1차 자료, 기타 지적 재산과 관련된 항목의 출처를 적절한 방식으로 명시하지 않은 경우.
- ③ 기 출간된 타인의 저술을 일부 인용할 때 인용부호, 각주, 내용주 또는 기타의 적절한 방식을 통해 이를 명시하지 않은 경우.

제4조 (중복 게재와 이중 출판) 저자는 이전에 출판된 자신의 연구물(게재 예정이거나 심사 중인 연구물 포함)을 새로운 연구물인 것처럼 출판(투고)하거나 출판을 시도하지 않는다. 보다 구체적으로 기 출간된 자신의 저술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인용할 때 인용부호, 각주, 내용주 또는 기타의 적절한 방식을 통해 이를 명시하지 않은 경우는 중복 게재로 간주한다.

제5조 (논문의 수정) 저자는 논문의 평가 과정에서 제시된 편집위원과 심사위원의 의견을 가능한 한 수용하여 출판될 논문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절 편집위원이 지켜야 할 윤리규정

제6조 (책임) 편집위원은 투고된 논문의 게재 여부를 결정하는 모든 책임을 지며, 저자의 인격과 학자로서의 독립성을 존중해야 한다.

제7조 (공정한 취급) 편집위원은 학술지 게재를 위해 투고된 논문을 저자의 성별, 나이, 소속 기관은 물론이고 어떤 선입견이나 사적인 친분과도 무관하게 오로지 논문의 질적 수준과 투고 규정에 근거하여 공정하게 취급하여야 한다.

제8조 (공정한 심사의뢰) 편집위원은 투고된 논문의 평가를 해당 분야의

전문적 지식과 공정한 판단 능력을 지닌 심사위원에게 의뢰해야 한다. 심사 의뢰 시에는 저자와 지나치게 친분이 있거나 지나치게 적대적인 심사위원을 피함으로써 가능한 한 객관적인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한다.

제9조 (비밀유지) 편집위원과 심사위원은 투고된 논문의 필자신상과 논문 내용에 관하여 비밀을 유지해야 한다.

제3절 심사위원이 지켜야 할 윤리규정

제10조 (성실한 심사) 심사위원은 학술지의 편집위원(회)이 의뢰하는 논문을 심사규정이 정한 기간 내에 성실하게 평가하고 평가 결과를 편집위원(회)에게 통보해 주어야 한다. 만약 자신이 논문의 내용을 평가할 책임자가 아니라고 판단될 경우 그 사실을 편집위원(회)에 지체 없이 통보한다.

제11조 (공정한 심사) 심사위원은 논문을 개인적인 학문적 신념을 떠나 객관적 기준에 의해 공정하게 평가하여야 한다. 충분한 근거를 명시하지 않은 채 논문을 탈락시키거나, 심사자 본인의 관점이나 해석과 상충된다는 이유로 논문을 탈락시켜서는 안 되며, 심사 대상 논문을 제대로 읽지 않은 채 평가해서도 안 된다.

제12조 (비밀유지) 심사위원은 심사 대상 논문에 대한 비밀을 지켜야 한다.

제3장 윤리위원회

제13조 (윤리위원회 구성과 의결)

- ① 윤리위원회는 사회과학연구원 원장이 위촉하는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 ② 위원장은 편집위원장이 맡으며, 편집위원, 연구원 소속 연구원, 연구원 외부의 전문가 등이 윤리위 위원을 맡는다.
- ③ 윤리위원이 윤리심사의 대상이 되었을 경우에는 윤리위에서 제외한다.
- ④ 윤리위원회는 재적위원 2/3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4조 (윤리위원회의 권한)

- ① 윤리위원회는 윤리규정 위반으로 보고된 사안에 대하여 보고자, 피보고자, 증인, 참고인 및 증거자료 등을 통하여 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사회과학원 원장에게 보고한다.
- ② 제3조 내지 제4조 위반이 사실로 판정된 경우 윤리위원장은 연구원 원장에게 적절한 제재조치를 건의할 수 있다.

제15조 (윤리위원회의 조사 및 심의) 윤리규정 위반으로 보고된 피보고자는 윤리위원회에서 행하는 조사에 협조해야 한다. 이 조사에 협조하지 않는 것은 그 자체로 윤리규정 위반이 될 수 있다.

제16조 (소명기회의 보장) 윤리위원회는 보고자와 피보고자에게 의견진술, 이의제기 및 변론의 권리와 기회를 동등하게 보장하여야 하며 관련 절차를 사전에 알려주어야 한다.

제17조 (피보고자에 대한 비밀 보호) 윤리규정 위반에 대한 윤리위원회의 최종적인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윤리위원은 피보고자의 신원을 외부에 공개해서는 안된다.

제18조 (윤리규정 위반에 대한 제재의 절차 및 내용)

- ①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윤리규정 위반이 사실로 판정되어 윤리위원회의 보고나 제재 건의가 있을 경우, 원장은 연구원 운영위원회를 소집하여야 하고, 운영위원회는 제재 여부 및 제재의 내용 등 사후조치를 결정한다.

- ② 연구원 운영위원회가 피보고자를 제재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위반행위의 경중에 따라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제재를 가할 수 있다. 단, 이들 각호의 제재는 병과할 수 있다.
1. 논문이 학술지에 게재되기 이전인 경우 또는 학술대회 발표 이전인 경우에는 당해 논문의 게재 또는 발표의 불허.
 2. 논문이 학술지에 게재되었거나 학술대회에서 발표된 경우에는 당해 논문의 학술지 게재 또는 학술대회 발표의 소급적 무효화.
 3. 향후 5년 동안 연구원에서 발간하는 학술지에 논문 게재 혹은 학술대회 논문 발표 및 토론 금지.
 4. 향후 5년 동안 연구원 소속 연구자 자격 제한.
 5. 기타의 제재
- ③ 연구원 운영위원회가 제2항 제2호의 제재를 결정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공식적 연구업적 관리기관에 통보하며, 기타 적절한 방법을 통하여 대외적으로 공표한다.
- ④ 연구원 운영위원회가 제재를 하지 않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윤리위원회와 보고자 및 피보고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제4장 보 칙

제19조 (윤리규정의 개정) 윤리규정은 연구원 운영위원회의 의결로 개정한다.

제20조 (기타)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강원대학교의 연구윤리 규정에 따른다.

부 칙(2008년 07월 01일)

이 규정은 200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3년 9월 20일)

이 규정은 2013년 9월 20일부터 시행한다.

社會科學研究 제58집 1호(2019)

발 행 | 2019년 06월 30일

인 쇄 | 2019년 06월 30일

발행인 | 김 세 건

편집인 | 강원대학교 사회과학연구 편집위원회

발행처 | 강원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

24341 강원도 춘천시 강원대학길 1

강원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2호관 227호)

전화 : 033-250-7212

E-mail: socialin@kangwon.ac.kr

인쇄처 | 한국학술정보(주)(031-940-1118)
